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35
----------	------

2024년 6월 28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이종배 의원(찬성자 22명)
- 제 안 일 : 2024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 상 정 일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이유

(제안설명자 : 이종배 의원)

가. 제안 이유

-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에게 포상하는 사항에 대하여「청년 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 문제 해결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안 제3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종류, 방법 및 시기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입법예고(2024.6.4.~6.8.)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현행 10개 시상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시민상(이하 ‘시민상’)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이하 ‘청년상’)”을 신설(안 제 2조제1항제6호)하여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발굴하여 포상하려는 것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20명(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16)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를 통해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 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단체 등에게 봉사상, 문화상, 환경상, 복지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성평등상, 교통문화상, 건축상, 건설상, 안전상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그 시상방법과 시기를 달리하여 서울특별시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음.

〈 시민상 종류별 시상인원 및 시상일 〉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조례(별표 1) 기준)				시상일(조례 제4조 기준)	주관과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봉 사 상	21	1	5	15	· 10월28일(서울시민의 날)	시민협력과
문 화 상	14	-	14	-	· 10월20일(문화의 날)	문화정책과
환 경 상	21	1	5	15	· 6월 5일(환경의 날)	기후환경정책과
복 지 상	16	2	5	9	· 복지자원봉사· 후원분야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 장애극복자 분야 (4월 20일~4월26일, 장애인주간)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어린이 및 청소년상	114	4	22	88	· 어린이 및 소년분야 (5월 5일, 어린이 날) · 청년 및 청소년지도 분야 (5월 셋째주 월요일, 성년의 날)	청소년정책과
성평등상	6	1	2	3	· 9월 1일~9월 7일(양성평등주간)	여성평등담당관
교통문화상	6	1	2	3	· 10월31일(기존 시상일) ※ 별도의 기념일이 없음	교통정책과
건 축 상	31	1	5	25	· 6월18일(건설의 날) ※ '09년부터 서울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 후 주로 행사기간(10월 중) 시상 중	건축기획과
건 설 상	16	1	5	10	· 9월10일(한강종합개발 준공일)	기술심사담당관
안 전 상	7	1	2	4	· 10월21일(성수대교 붕괴사고일)	재난안전예방과

〈서울특별시시민상 10개 분야별 연혁〉

○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및 조례 통합('03. 06. 16.)

- ~'03.6월 : 소관부서별 개별조례에 따라 시상

①문화('49), ②어린이 및 청소년('79), ③건축('86), ④시민대상('89),

⑤자랑스러운 시민상('92), ⑥환경('97), ⑦조경('98), ⑧교통('00)

- '03. 06. 16. : 8개분야를 「서울사랑 시민상」으로 통합 및 조정

▶ 시민대상은 봉사상으로 변경, 자랑스러운시민상은 폐지, 조경상은 환경부문으로 통합, 복지부문과 토목부문 신설

- '04. 06. 21. : 여성부문 신설, 복지부문 구분(자원봉사·후원·종사자 / 장애극복)

- '06. 11. 20. : 「서울특별시 시민상」으로 명칭 변경

- '15. 05. 14. : 안전상 신설

- '16. 05. 19. : 시상명칭 변경(토목상 ⇒ 건설상) 및 인원 조정

- '17. 09. 21. : 시상명칭 변경(여성상 ⇒ 성평등상)

- '22. 12. 30. : 시상시기 변경[여성주간(7.1.~7.7) ⇒ 양성평등주간(9.1.~9.7.)]

- 고용불안정, 물가상승, 산업구조 개편의 가속화,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창의적·진취적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청년들을 표창하여, 많은 청년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상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청년세대 어려움 인식 : 청년정책 수혜청년 68.1%, 일반청년 69.6% 심각하다('22년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

※ 집행부(시민협력과) 의견 : 서울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청년에게 청년상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쟁점사항 없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청년상 수상 연령(안 제3조제3항)

- 본 개정안은 현행 어린이분야, 소년분야, 청년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는 어린이및청소년상 중 청년분야(청년분야 : 19세 이상 24세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항제6호와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상 수상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여 청년상을 별도로 시상하려는 것임.

* 제3조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다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19세부터 24세까지인 자를 청년으로 보아야할지 청소년으로 보아야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으며,
 - 어린이및청소년상의 청년분야(19~24세)와 본개정안을 통해 신설할 청년상은 그 시상목적과 표창취지가 상이한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어린이청소년상의 경우 대상 연령을 7세이상 18세 이하로 평생교육국에서 시상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되는 청년상의 경우 대상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미래청년기획단(미래청년기획관으로 조직개편 예정('24.7.1.))에서 시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행정국(시민협력과)으로부터 보고 받음.

2) 청년상 시상 시기와 효과성(안 제4조제1항제6호)

-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청년상의 시상시기를 청년의 날인 9월 세 번째로 토요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청년의 날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정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 다만, 청년의 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및 시상 행사*가 진행되어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시상할 여지는 없는지, 시상행사가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2023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 : 제5회 청년 스타트업 어워즈, 제8회 청년정책경진 대회, 제5회 통일 창작 영상 콘테스트 등

- 한편,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청년의 날에 많은 행사**를 시행하는바, 신설되는 청년상이 이러한 행사들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행사간 연계체계 구축 등 시민상 시상 부문 확대의 효과성 확보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의2(청년의 날) ①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023 서울 청년을 위한 일주일('23.9.16~'23.9.21.) :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 정책 체험 박람회, 취업 박람회 등

3) 청년상 시상 인원(안 별표1)

- 안 별표1은 어린이및청소년상은 94명(대상 3, 최우수상 19, 우수상 72)을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청년상을 신설하여 시상인원을 20명(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16)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인구통계('23년 기준, 서울시)를 살펴보면, 본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 및청소년상 수상 대상자(7~18세*)의 경우 약 550만명(5,479,198명)이며 청년상 수상 대상자(19~39세)는 약 1,325만명(13,245,155명)으로 청년상의 대상 인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제3조(수상대상자) ② 1. 어린이분야 : 7세 이상 12세 이하, 2. 소년분야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청년상 수상인원이 어린이및청소년상 수상인원에 비해 적은 수이며, 평등상(6명), 교통문화상(6명), 시민안전상(7명) 등 보다는 많은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및 시상목적과 취지(「청년기본법」 제26조제1항*)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시상인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 단순 인구 비교는 간접 비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기본법」 제26조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시상종류별 수상후보자 접수 및 시상 현황〉

(단위 : 명)

분야	총 계			2023년			2022년			2021년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계	1,812	634	2.8:1	651	214	3:1	499	187	2.6:1	662	233	2.8:1
봉 사 상	190	62	3:1	106	21	5:1	41	20	2:1	43	21	2.1:1
문 화 상	285	33	8.6:1	88	11	10:1	78	12	6.5:1	119	10	11.9:1
환 경 상	142	60	2.3:1	40	19	1.9:1	66	20	3.3:1	36	21	1.7:1
복 지 상	144	48	3:1	55	16	3.4:1	45	16	2.8:1	44	16	2.7:1
어린이 및 청소년상	551	282	1.9:1	187	106	1.7:1	100	62	1.6:1	264	114	2.3:1
성평등상	34	15	2.2:1	9	5	1.8:1	14	4	3.5:1	11	6	1.8:1
교통문화상	32	16	2:1	7	4	1.7:1	14	6	2.3:1	11	6	1.8:1
건 축 상	276	48	5.7:1	106	9	10:1	86	22	3.9:1	84	17	4.9:1
건 설 상	76	46	1.6:1	23	16	1.5:1	24	15	1.6:1	29	15	1.9:1
안 전 상	82	24	3.4:1	30	7	4.3:1	31	10	3.1:1	21	7	3:1

- 결론적으로, 청년상 신설은 청년의 적극적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린이및 청소년부문의 후기청소년을 위한 수상분야 삭제, 시상 시기 및 시상 대상 인원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 각종 캠페인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지역발전에 청년참여를 촉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많은 청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서상열, 유만희,
유정인, 이봉준, 이상욱,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에게 포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 문제 해결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종류, 방법 및 시기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청년상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나목 중 “청년 및 청소년지도분야”를 “청소년지도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청년상 :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

별표 1 중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94	3	19	72
-------------------	----	---	----	----

별표 1의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란 다음에 서울특별시청년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 특별시시민상(이하 “상”이라 한 다)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5. (생 략) <u><신 설></u> 6. ~ 10. (생 략) ② (생 략) 제3조(수상대상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 시어린이및청소년상의 수상대상 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 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 · 2. (생 략) 3. <u>청년분야 : 19세 이상 24세 이 하</u> <u><신 설></u>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서울특별시청년상</u>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수상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 상의 수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u>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가. (생략)

나. 청년 및 청소년지도분야 :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

<신설>

6. ~ 10. (생략)

② (생략)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지도분야 -----

-

6. 서울특별시청년상 : 청년의 날
(9월 세 번째 토요일)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114	4	22	88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94	3	19	72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시상인원 증가 없이 정원내 조정을 통해 시상종류(서울특별시청년상)를 신설¹⁾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별표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114 (→94)	4 (→3)	22 (→19)	88 (→72)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